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-1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4. 2. 19.

발 의 자 : 김수진·장영숙·강성국
김순금·서종수·오진아
유동균·이필례·조남진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명시하고,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은 “3년”을 “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함(안 제5조제5항)
- 나. 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비(안 별표)
 - 5번란 주관과 변경 : 복지행정과 → 가정복지과
 - 9번란 시설명 변경 : 장애인주간보호센터 →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
 - 15번란 신설 : 독거노인복지센터 추가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개정근거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
4. 개정조례안 : 불임

5. 예산조치 : 불필요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4. 2. 20 ~ 2. 25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불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”를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청장은 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및 제23조”를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탁자선정위원회”를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”을 “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3년으로 한다”를 “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수탁자선정위원회”를 “선정위원회”로,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, “해당시설”을 “해당 시설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장부”를 “장부 및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구청장은 수탁자가”를 “구청장은”으로, “원상회복 등”을 “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”으로 한다.

별표 5번란 중 “복지행정과”를 “가정복지과”로 하고, 9번란 중 “장애인주간보호센터”를 “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”로, “44길 30-7(상암동)”을 “30길 9-22(성산동)으로 하며, 1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번	주관과	시설명	위치	주요기능
15	사회복지과	독거노인복지센터	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46, 402호(동교동)	노인돌봄 서비스제공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②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하거나,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및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“사회복지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복지 관련 시설,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.</p> <p>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,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>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----- ----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----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-----.</p> <p>④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-----</p>

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~③(생략)

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,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시설관리 등)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-----.

⑤ -----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-----

----- 선정위원회
----- 한 차례-----

----- 해당 시설-----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~③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 따른 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----- 장부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시설관리 등) 구청장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----- -----.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(제3조 관련)

연번	주관과	시설명	위치	주요기능
5	복지 행정과	영유아통합 지원센터	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(신공덕동)	영유아가족 지원
9	사회 복지과	장애인 주간보호센터	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30-7 (삼암동)	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

<신 설>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(제3조 관련)

연번	주관과	시설명	위치	주요기능
5	각 절 복지과	영유아통합 지원센터	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(신공덕동)	영유아가족 지원
9	사회 복지과	마포장애인 주간보호센터	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길 9-22 (성산동)	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
15	사회 복지과	독거노인 복지센터	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46, 402호 (동교동)	노인돌봄 서비스제공